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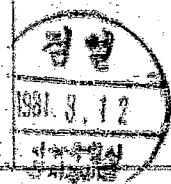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분류번호	문 43-3 75-7927	신청규정	문 43-3 신청사항
제시기간	시 43		
시행일자	87. 3		
보통년할			
보 포 기 관	제2부 시장	문 3.6	사무 담당관
	도시계획국	문 3.6	
	도시계획과	문 3.6	
기안내일사	문 3.6	87. 3 (제2부)	NO 459



문 3/9

NO 459



결 수 일 기	과안 참조	발 신	일 기
제 목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비 처분 규정 개정		

(제1안) 내부 강제

1. 서울특별시 예규 제392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비 처분 규정중 일부를 개정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역

1) 체비지 매과대금 연체 이차율 (년 35% → 년 27%)

의사 (은행대출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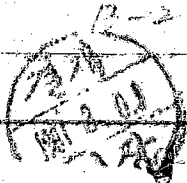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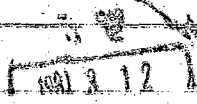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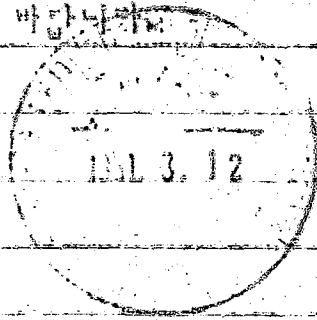
2) 일반 공매 3위 이상 유찰된 토지를 건축에 의한 수의 매과 제도를 폐지 → 계속 공매 - 은행

결부 개정안 요지, 개정 이유, 개정 대비표 과/부. 곱.

(제2안)	143-302
수신	문과 공보실장
제목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비 처분 규정중 개정 규정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비 처분 규정을 개정 하였기 의뢰 하	

우리 시보에 게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부 개정안 1부. 송.



。修正要旨。

1 替費地賣却代金延滞利率引下

延期 (35% → 27%)

~~2 同) 土地賣却代金延滞利率引下 隨意賣却制度廢止~~

修正理由

1 利率引下

中 市中銀行金利引下

。貸出：年 25% → 20%

。延滞：年 30% → 27% (銀行金利連動制)

中 一般市有財産：年 35% → 27% 引下

市営 APT 分譲金：年 19.5% (定期預金利率)

中 不動産景氣沈滞に因りて 歳入確保

中 实际需要者賣却誘導

~~2 同) 土地賣却代金延滞利率引下 隨意賣却制度廢止~~

~~中 土地市場投機行為根絶~~

~~中 假需要者投機抑制~~

~~中 土地賣却時時令物議除去~~

다음특별시 예규 제 호



다음특별시 替賣地管理 및 處分規程中 改正

다음특별시 替賣地管理 및 處分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第2項 第1号中 「納付日까지 年35%」
를 「納付日까지 年27%」로 한다

第14條 第3項 第1号 및 第2号中 「年3割5分」
를 「年2割7分」으로 한다

附 則

- (1) 이 規程은 1981. 3. 16. 부터 施行한다
- (2) 이 規程 施行以前에 이미 契約完了 또는
賣却한 替賣地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程에
依한다

서울특별시 연구 제 호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중 개정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4조 제2항 제1호를 "납부일 까지 년 35%" 을 "납부일 까지
년 25%" 로 한다.

제7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년 3할 5푼" 을 "년 2할 7푼"
으로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1. 3. 16. 부터 시행 한다.
-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완료 또는 매각한
체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p>1947년 1월 1일</p>

1947년 1월 1일

1947년 1월 1일

<별지 제 7 호 서식 >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채 비 지 매 각 공 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지 구 명	총원지수	면 적	최저·최고면적	매 각 재 산 위 치

2. 입찰종류 및 입찰일시

3. 입찰 및 등록장소: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 방법: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낙찰
전일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금을
철부하여야 합니다.

6.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일
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납부금의~~
2%

금리를 가산하여  하여야 한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귀속합니다.

7.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세 및 북세납세필증을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인 때

나. 기재착오 : 구획번호나 예정업종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9. 적지지역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진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상,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명도에 관한 책임은 당시가
지지 아니하오니 현장확인후 응당하시기 바랍니다.

11. 관계도면 및 계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
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별자제 8호서식>

<서울특별시공로제 1호>

채 비 지 매 각 공 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지 우 명	총필지수	면 적	회거·회고면적	매각재산위치

2. 입찰종류 및 종류일시

3. 입찰 및 종류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방 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시장용지 입찰가격

시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또는 낙찰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이 1천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 당일 11:00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측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함)

7. 시장 시설보증금납부

시장용지 낙찰자는 낙찰액의 2천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시설보증금으로 잔금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내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 3%의 불이익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용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의 유의사항
외거절내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시세 및 공채납세필증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인 때

나. 기재 착오 : 구획번호나 예정면적 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11. 체비자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 부터 주택전입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상,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 정도에 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아니하오니 현장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3. 관계도면 및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 .

서울특별시장

주임인자

매 매 계 약 서

포	날	계	과
인			

매장소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지주 구획 토

 회비지에정면적 평 합

2. 매도대금: 총액 금액 원정부

3. 계약보증금: 금액 원정부

4. 대금납부일자: 서기 197 년 월 일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서울특별시장을 (이하)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종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서명 날인후 각각 1종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서기 197 년 월 일

매도인(갑): 서울특별시

 위대표 시장 (인)

매수인(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성 명

계 약 약 정 조 항

제 1 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2. 본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3 조 을이 전 제 2 조를 위반하였거나 위 매도대금을 대금 납부 일자에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해약되지 아니 하였을 때는 매도대금 총액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본이유금의~~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납부기간의 연장은 계약일로 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본계약 약정 전 2, 3 조를 을이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소북으로 한다.

제 5 조 매각토지 면적은 환지역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서 장차 환지 확정 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감의 생하여도 을은 하등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갑은 본계약 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파

토지할인이 다른 관제법규의 유제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출이 래로대금을 완납한 후에 출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출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각 토지의 총잡이 있을 때에는 증정된 토지대금은 경산시의 시가로 하고 감정된 토지대금은 계약당가에 년 5분의 이자, 를 가산하여 각각 정산한다.

제 8 조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을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에게 결정권이 있다.